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053
○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 외 10명
○ 발 의 일 : 2016년 3월 2일
○ 회 부 일 : 2016년 3월 3일

2. 제안이유

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제안에 대한 회신이나 정책 반영 여부 등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나. 이에 시민 정책 제안에 대한 구체적 관리를 체계화하고 제안자의 자부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시민 제안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안에 대한 회신 및 공개 여부를 구체화함(안 제15조).

나. 제안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완료단계에서는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채택된 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나. 입법예고(2016.3.8.~3.15)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현재 시민제안은 천만상상오아시스, 국민신문고, 정책박람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접수·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에 접수된 시민제안은 6,080건에 달하고 있으나, 채택된 제안은 196건, 이 중 창의상을 수상한 건은 18건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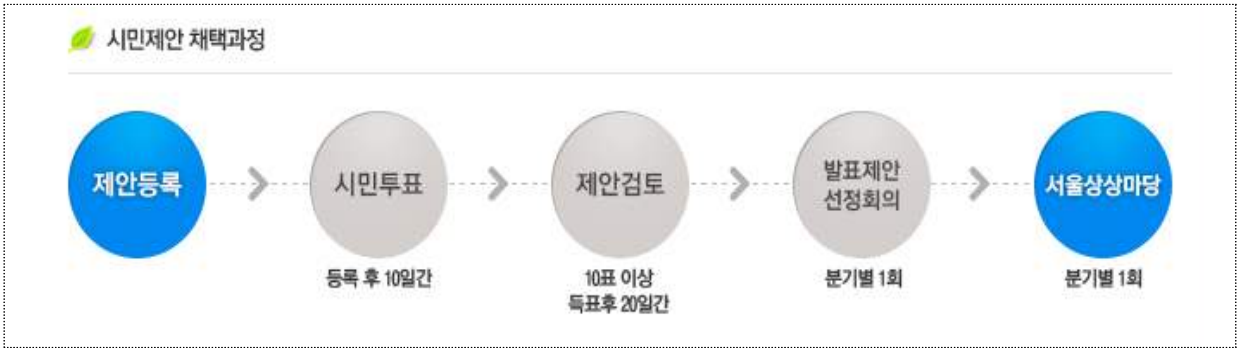

〈채택제안 실행절차〉

제안접수 〈온 · 오프라인〉	○ **시민주체별 균형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제안창구 마련** <일반제안> **천상오**(상시) <전문제안> **제안의 날**(월1회, 부서장면담) <그룹제안> **시민시장실** <분야별제안> **정책아이디어마켓**(정책박람회)
제안평가	○ **일반시민과 전문평가단의 투표 및 숙성을 거쳐 해당 부서 검토** - 전문평가단 + 일반시민 온라인투표 → 부서검토
제안채택 및 실행	○ **부서 검토후 최종 채택제안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 전부채택 20만원, 부분채택 5만원 ○ **부서에서는 채택제안 실행** - 천상오 사이트에 실행계획 입력
사례공유 및 확산 〈정책박람회, 서울상상마당〉	○ **정책박람회를 통해 시민 제안제도의 성과를 집대성, 참여분위기 확산** ○ **온 · 오프라인 제안 중 우수한 채택제안 중심으로 발표 · 토론, 공유** - 창의상 후보로 추천하며, 제안 시민 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 실행 부서도 서울창의상 '제안실행 부문' 제출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제안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 시민들의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연도별 시민제안 현황 〉

구 분	제안 수 (채택수)			
	총 계	천 상 오	국민신문고	정책박람회
2013년	9,100(147)	8,031(116)	767(24)	302(7)
2014년	8,157(182)	6,650(119)	1,109(49)	398(14)
2015년	6,080(196)	4,714(97)	907(60)	459(39)

〈최근 3년간 서울시 창의상 수상 현황〉

(단위 : 건)

구 분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상생협력	예산절감	지식경영		
		시민	공무원	시민	공무원				시민	동아리	공무원
2013년	접수	9,100	2880	147	205	206	-	3	36	40	42
	채택	18	18	15	13	38	-	3	9	19	18
2014년	접수	8,157	1987	182	163	169	97	3	38	42	41
	채택	18	17	14	20	28	13	3	9	18	16
2015년	접수	6,080	1669	196	159	151	86	3	32	39	45
	채택	18	18	3	18	33	13	3	9	18	18

※ 상생협력부문은 2014년부터 신설 운영

가.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안 제15조 신설)

○ 안 제15조제1항은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의 개방성·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관리)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천만상상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안의 날, 시민시장실, 정책박람회 등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가 미진한 상황임.

○ 안 제15조제2항은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의 보존·관리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택제안의 효율적 실행 관리, 중복제안 관리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국민제안규정」
제9조의2(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나. 제안의 실시단계에 제안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안 제16조 신설)

○ 안 제16조는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제안 실시단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협업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정책평가 완료단계”는 제안이 채택된 시점인지, 실행된 후 결과에 대한 평가 시점인지 불명확하므로, 정책평가 완료단계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규정에서 “정책평가 완료단계”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6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안 제17조 신설)

○ 안 제17조는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실시기관은 평가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규정 신설로 채택제안의 적극적 시행 및 성과분석을 통해 우수제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담당부서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다만, 채택제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는 등 세부절차의 규정화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신정희